㈜코람코가치투자양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대비표(2차 개정)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	**제10조 (보수)** (중략)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자산운용에 따른 대가로서 매입보수, 운용보수, 매각기본보수 및 매각성과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매입보수(부가가치세 별도): 수탁자의 투자대상자산 매입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4,160,000,000]원을 지급한다. ~~매입보수는 위탁자 명의로 해당 투자대상자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하고, 수탁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제10조 (보수)** (중략)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자산운용에 따른 대가로서 매입보수, 운용보수, 매각기본보수 및 매각성과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매입보수(부가가치세 별도): 수탁자의 투자대상자산 매입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4,160,000,000]원을 지급한다. 매입보수에 대한 위탁자의 지급의무는 위탁자 명의로 해당 투자대상자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때에 확정되며, 수탁자는 이와 동시에 매입보수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다만, 매입보수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i) 위탁자는 매입보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 이후 수탁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ii)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에 관하여 위탁자가 투자대상자산의 매입자금 조달을 위해 체결한 담보대출약정의 대리금융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제20조	**제20조 (계약의 해지)** (중략)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수 및 비용 등 전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중략)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수 및 비용 등 전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무위반과 직접 관련된 보수 및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